

장애인 합창대회. 지휘자 이경미 선생님, 반주자 서정림 선생님. 참가 인원 : 지적장애, 지적장애, 간질장애, 척추장애, 시각장애, 농아인, 일반인 등 45명.

캐나다 록키산맥을 여행하고 있는데 강순옥 복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로밍을 하고 떠났지만 불통이어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했다. 내 동생이랑 장애인 합창대회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음치인 나는 학창생활을 제외하고는 평생 한 번도 합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장애인들과 함께. 흔쾌히 해보겠노라고 대답했다. 음지에서 살고 있는 내 동생을 세상 속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동생이랑 장애인 합창대회 동참

그 모든 복지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각 단원들의 가정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서 연습장으로 모셨다.

연습장에 도착하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원용숙씨와 최여름이 따뜻한 일회용 커피로 우릴 맞이했다.

연습시작. 제멋대로인 우리를 위해 끝없이 발성연습을 다듬어 주시는 지휘자. 가사의 내용에 따라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그 노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연습실은 갑자기 서울 예술의 전당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아, 화음이여! 이토록 눈물

남숙희 칼럼

칼럼위원(시인)



장애인 합창대회에 다녀와서

겨운 우리들의 화음이여!

휴식시간엔 로타리클럽, 아이코리아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인 안금선씨와 시각장애인 간사인 안경희씨가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 빵은 유달리 맛있었다. 우리들의 연습은 강행군이었다.

드디어 발표 날. 새벽 찬기운을 가르며 진부령을 넘어서 황성에 도착했다. 각각 특징 있는 의상을 하고 16개 시와 군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불구를 극복하려는 그들의 의지, 그들의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아픔들. 그들의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희망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았다.

아, 인생이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역경을 딛고 그렇게도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그들. 하나님이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고성군은 은상.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합창을 했다고. 그래서 '대상'을 받아야 했었다고.

우리들은 지휘자를 존경했고, 그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래 불렀다고. 내년을 기약하고 우리들의 만남의 시간들을 반추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 해군 사령관 같이 연습이 시작되고 끝날 때 우렁차게 구령을 하며 반장을 멋지게 하신 85세의 김현수 어르신. 꼬불꼬불 위험한 길을 잘 운행한 우리의 젊은 친구 이정호 기사.

모든 합창단원들의 한분 한분을 배려해 준 강순옥 복지사. 연습 중에 가끔 지휘자

를 놀리던 정래설씨, 8년전 사고로 갑자기 장애가 된 학교 후배 함종균. 내 중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의 사촌동생인 탁승복.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떡볶이를 맛있게 한다고 자랑이었다.

어느 날 김치를 담갔는데 소금인줄 알고 뿌렸는데 비료였다고, 울먹이며 말하던 내 동갑내기 조미숙씨. 패티김보다 멋지게 노래하는 가수. 머리가 긴 김춘례씨, 복스럽게 생긴 여고생 곽현지. 젊은이답게 아주 화음을 잘 넣어준 농아복지사 신술씨. 총각인줄 알고 중매를 서려고 했더니 네 살 난 예쁜 아이가 있다고, 언제나 예의바르게 내 손목을 꼭 붙잡던 오매자씨.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세상에 좀 불편하게 태어났을 뿐이다. 나는 이번에 한 달 정도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에게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이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각자의 능력을 개발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쾌적하고 음악이 흐르는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들이 세상 속에서 편견없이 잘 살고 있다고 소리치게 하자.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합창단 여러분이 흘렸던 땀방울을 정말 사랑합니다.

특/별/기/고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은 고장으로 산림은 맑은 공기와 건강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생명의 숲인 산림이 순식간에 산불로 소실되어버리니 안타까운 일이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수십 년에 걸쳐 가꾼 울창한 산림이 한때의 방심과 실수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가을철은 대기 중의 습도가 낮고 바람이 많아 다른 계절에 비해 작은 불씨에도 쉽게 착화되고, 강풍으로 인해 큰불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대기가 건조한 요즘 같

은 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1월 1일~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최근 3년간(08년~10년) 전국적으로 11월에만 평균 29건의 산불로 산림 17.78ha가 소실되고 4300만원의 임목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및 소각으로 인한 인재로써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실화위험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되므로 산에 오를 때에는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며, 농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을

산불예방의 중요성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속초 관내는 설악산 단풍을 즐기려는 산행객들로 인한 산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은 산행을 삼가하고, 저체온증·탈진 등 산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조금만 조심을 하고 신경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하고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산불도 부주의와 실수로 초기진화의 시기를 놓쳐 걷잡을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근 민가까지 덮쳐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게 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큰 재앙을 몰고 온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항상 명심하고 산불발생의 소지가 있는 각종 소각 행위, 화기취급행위, 담뱃불 등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유영수 소방위 동광119안전센터장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문) 갑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갑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갑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

니다.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

니다.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갑의 가족인 처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갑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